

우정사업본부공고 제2013 - 51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공고 제2009-11호('09.2.25.) 「다량의 내용증명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」를 다음과 같이 제 공고합니다.

2013년 9월 23일

우정사업본부장

다량의 내용증명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

1. 서비스 개요

- 내용증명이란 우편법시행규칙 제 25 조(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) 근거 하에 “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”임
- 다량(50통 이상)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고객이 우편물을 제작·접수하는 등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
 - ※ 전자우편 :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·봉합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

2. 이용조건

- 내용문 2매까지, 접수물량이 5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을 전자우편 봉합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
 - ※ 2매일 경우 출력방법은 양면인쇄에 한함
- 주소록(가변데이터)은 수취인 성명, 우편번호, 주소,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, Text파일로 우체국에 자료 접수
 - 내용문은 아래한글, Text, 훈민정음, MS-WORD, 엑셀로 작성된 문서
 - ※ 제공할 주소록, 내용문의 좌·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접수일주일 전에 우체국과 협의

3. 이용요금

-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, 내용증명수수료,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
 - 예시1) 내용문 1매를 전자우편 봉합식 일반등기로 발송 시(내용문만 동일하게 3매 인쇄)
(우편요금 300원 + 등기수수료 1,630원) + 내용증명 수수료 1,000원
+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150원 = 3,080원
 - 예시2) 내용문 2매를 전자우편 봉합식 일반등기로 발송 시
(우편요금 300원 + 등기수수료 1,630원) + 내용증명 수수료 1,500원
+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240원 = 3,670원
 - ※ 우편요금,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
- 등기우편 감액을 적용 :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합산액의 3%

4. 서비스제공

- 접수 및 배달정보 보관기간
 - 종적조회 자료(접수 및 배달정보 등) 3년 보관

- 접수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(우체국보관용) 3년 보관

- o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가능

-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
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(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)

5. 시행시기 : '14. 1. 1.

6. 문의처

- o 우정사업본부 :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 (☎ 02-2195-1222)